

2-57 히알루론산

1) 제조기준

- (1) 원재료 : 계관(닭벼슬) 또는 유산구균(*Streptococcus zooepidemicus*)
(단, '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'의 기능성 내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는 유산구균(*Streptococcus zooepidemicus*)에 한함)
- (2) 제조방법 : 상기 (1)의 원재료를 추출 또는 배양·추출한 후 정제하거나 나트륨염으로 제조하여야 함
- 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히알루론산으로서 900 mg/g(건조물)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
2) 규격

- (1) 색상 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·이취가 없어야 함
- (2) 히알루론산
 - (가) 원료성 제품 : 표시량 이상
 - (나) 최종제품 : 표시량의 80~120%
- (3) 수분 : 10% 이하(원료성 제품에 한함)
- (4) 중금속
 - (가) 납(mg/kg) : 2.0 이하
 - (나) 카드뮴(mg/kg) : 0.5 이하
 - (다) 수은(mg/kg) : 0.5 이하
 - (라) 비소(mg/kg) : 1.0 이하
- (5) 대장균군 : 음성

3) 최종제품의 요건

- (1) 기능성 내용 : 피부보습·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
- (2) 일일섭취량
 - (가)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 히알루론산으로서 120~240 mg
 - (나)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 히알루론산으로서 240 mg

4) 시험법

- (1) 성상 : 제 4. 2-7 성상시험법
- (2) 히알루론산 : 제 4. 3-69 히알루론산
- (3) 수분 : [별표 4] 참조
- (4) 납, 카드뮴, 수은, 비소 : [별표 4] 참조
- (5) 대장균군 : [별표 4] 참조